

일본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 및 정책

I. 머리말

II. '경제민주화' 의 범위

III.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

1.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
2. 재벌동족지배력배제법
3.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IV.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V. 맺음말

미즈시마 레오(水島 玲央)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특집]

2012년도 특집호는 향후 국가적 의제의 중심이 될 '경제민주화'에 관한 세계 각국의 법제와 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I. 머리말

한국에서는 현재 ‘고용의 창출’이나 ‘복지의 확립’과 함께 ‘경제 민주화’가 선거의 큰 이슈가 되었다. 그 동안 큰 경제발전을 달성하고 G20 멤버로 확고한 지위를 확립한 한국에서는 앞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복지에 노력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고용의 창출’이나 ‘복지의 확립’에 대해서는 그 주제만 보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이루어질지 추측할 수 있으나 ‘경제 민주화’란 어떤 내용인지 또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지 애매하고 추상적인 것으로 느껴진다.

현재 ‘경제 민주화’가 논의되기에 이루어진 배경으로는 한국 국내에서의 경제 격차의 확대를 시정하고 재벌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근저에 있다.¹⁾

대한민국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쟁점이 된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도 한국 헌법에 근거가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논의가 되는 ‘경제 민주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또한 어떤 정책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지난 대통령 선거를 봐도 각각 후보자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어떤 후보는 ‘경제 민주화’를 ‘공정한 시장경제의 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에 비해, 다른 후보는 ‘경제 민주화’의 출발점으로 재벌개혁을 내세웠다.²⁾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근년의 한국에서의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정리하여, 그 범위와 정의를 이해한다. 그리고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이러한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어떤 논의가 전개되고 어떤 법제화가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大西裕, 「大統領選挙で何が変わるか「経済民主化」が最大の争点 財閥弱体化の政策は採りにくい」エコノミスト, 2012年10月16日, 32頁, 照.

2) キム・テユン, 「韓国大統領選の争点は財閥「経済民主化」で激論, 東洋経済, 2012年10月27日, 108頁参照.

II. ‘경제민주화’의 범위

먼저 한국 헌법에서의 경제관련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대한민국은 헌법 제119조 제1항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사유재산과 재산권 행사의 보장(헌법 제23조), 직업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헌법 제15조), 경제활동의 자유(헌법 제10조)를 보장하고, 헌법으로 시장경제를 보장하고 있다.³⁾

그러나 이는 ‘자유방임경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헌법 제23조 제2항이나 제37조 제2항, 그리고 제119조 제2항 등을 통해서 국가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⁴⁾

한국 헌법에서는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규제가 많은 배경으로 경제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허용된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라고 한다.⁵⁾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를 허용하지 않고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주의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⁶⁾

이러한 헌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현재 정치권에선 제119조 제2항을 근거로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 현상을 법으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칭해서 ‘경제민주화’라고 부른다”라고 한다.⁷⁾

III. ‘경제민주화’ 관련 법제

1.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過度經濟力集中排除法)

일본에서의 ‘경제 민주화’ 논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GHQ)에 의한 점령하의 민주화 과정에서 볼 수 있었다. 포츠담 선언 제10항에서는 “일본국 국민 사이에서의 민주주의적 경향의 부

3) 鄭宗燮, 『憲法學原論』, 서울: 博英社, 2012년, 225면 참조.

4) 鄭宗燮, 위의 책, 같은 면 참조.

5) 金哲洙, 『韓國憲法の50年』(敬文堂, 1998年) 4頁參照.

6) 金哲洙, 『憲法學概論』, 서울: 博英社, 2003년, 91면.

7) “‘경제민주화’ 배경과 정의” 서울신문, 2012년 10월 15일. <http://election2012.seoul.co.kr/news/newsView.php?pid=20121015006004&reDirect=false> (검색일: 2012. 12. 2.).

활 강화에 대한 모든 장애를 제거하여야 한다. 언론, 종교 및 사상의 자유와 기본적인 권의 존중은 확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연합국은 일본에 대하여 민주화를 요구하였다. GHQ는 일본의 민주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화족(華族)제도, 지주제도, 지방제도, 관료제도, 교육제도, 고용제도의 여섯 가지 제도를 들고 이 제도 개혁을 착수시켰다.⁸⁾ 일본에서의 경제 민주화는 이러한 전후 민주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1947년 12월 18일에는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過度經濟力集中排除法)」(昭和22年12月18日法律第207号)이 제정되었다.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은 27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이 법률은 “평화적 및 민주적인 국가를 재건하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가급적 신속하게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배제하고 국민 경제를 합리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으로 민주적이고 건전한 국민 경제 재건의 기초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였다.

제2조에서는 다양한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하였다. 예를 들면 ‘기업’(제1항), ‘독립기업’(제2항), ‘관계’(제3항), ‘사업분야’(제4항), ‘독점적 성질의 기업’(제5항), ‘경쟁자’(제6항), ‘생산능력’(제7항), ‘가족’(제8항), ‘개인 또는 가족에서의 부’(제9항)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각각 규정하였다.

이 글에서는 모든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확인할 수는 없으나, 중요한 것을 보면, ‘독점적 성질의 기업’이란, “독립기업 합병의 결과 또는 쇼와(昭和) 12년 7월 1일로부터 쇼와 20년 9월 1일까지의 사이에 당해 사업 분야에서 종전과 비해서 과당한 사업을 확장한 결과 당해 사업 분야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또는 가질 우려가 있는 기업을 포함하는 것”(제2조 제5항)이라고 규정하였다.

제3조에서는 “지주(持株)회사 정리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으로 이 법률 시행일에 이미 존재하거나 또는 쇼와 20년 8월 1일 이후 이 법률 시행 이전에 존재한 것을 지정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제1항). 그리고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또는 그 결합체이며 하나의 분야에서 가지는 총체적 규모가 크고 또는 둘 이상의 분야에서 점하는 지위를 집적한 힘이 크기 때문에 사업의 중요한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또는 다른 기업이 독립해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제2항).

제6조에서는 지주회사 정리위원회는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8) 嶺山政道, 「よみがえる日本 占領下の民主化過程」 日本ペンクラブ. www.japanpen.or.jp/e-bungeikan/guest/pdf/rouyamamasamichi.pdf (검색일: 2012. 11. 5.).

결정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제1항 참조). 그 때 고려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것을 들었다.

- ① 당해 기업의 내지(內地)에서의 생산액 또는 거래액의 당해 사업분야에서의 내지 전체의 생산액 또는 거래액에 대한 비율
- ② 당해 기업의 내지에서 생산능력과 쇼와 12년 6월 30일 이전의 내지에서 최고생산능력과 비교
- ③ 당해 기업의 내지에서 생산능력 또는 거래액의 당해 사업분야에서의 내지 전체의 생산능력 또는 거래액에 대한 비율과 쇼와 12년 6월 30일 이전의 그 최고 비율과의 비교
- ④ 다른 기업에 대한 당해 기업의 지배적인 관계의 내용
- ⑤ 당해 기업의 공장 사업장의 수 및 그 위치, 기타의 입지 조건
- ⑥ 공장 사업장의 생산과정에서의 상호적 관련성의 유무 및 그 정도와 공장 사업장의 원료 사용 또는 생산품의 생산 혹은 판매에서의 상호적 관련성의 유무 및 그 정도
- ⑦ 당해기업의 원료에 대한 지배의 내용
- ⑧ 독립기업의 합병, 기타 방법에 의한 사업 확장의 사정
- ⑨ 당해 기업 전체의 생산능률과 당해 기업의 각 부문 또는 그 결합체의 생산능률과의 비교
- ⑩ 독점 매수 또는 독점 판매, 기타 이에 유사한 독점적 성질 또는 제한적 성질의 결정, 기타 관계의 유무, 물품의 구입 혹은 판매에 대한 특권, 생산 혹은 판매의 제한, 가격의 고정, 사업지역 혹은 판매지역의 제한 또는 특허권 혹은 기술의 배타적 교환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 기타 관계의 유무 및 이의 결정, 기타 관계에의 참가의 유무
- ⑪ 개인 또는 가족의 성원이 기업에 대해서 하는 실질적 지배의 내용

제7조에서는 “지주회사 정리위원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 배제에 대해서 이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항). 그리고 그 조치로서는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제2항 참조).

-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배제하기 위한 원칙, 계획 및 절차를 정하는 것

- ② 여러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 및 조사하여, 정보의 정리 및 제출을 연구하고, 기록의 보존을 명하고, 보고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하고, 장부서류·기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당해 물건의 제출을 명하고 제출물건을 남기는 것
- ③ 관계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두를 명하고 심문하며 감정인에게 출두를 명하고 감정시키는 것
- ④ 공장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임검하여 업무 및 재산의 상황,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는 것
- ⑤ 재산의 양도 혹은 인도를 명하거나 주식, 기타 유가증권에 대해 의결권 행사의 위임을 요구하는 것 및 당해 재산이 개인 또는 가족 성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대가로 수령한 금천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해야 할 것을 명하는 것 또는 그 양도의 대가로 유가증권을 교부하고 이 유가증권의 임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
- ⑥ 법인, 기타 단체의 해산을 명하고, 기업연합, 기업결합, 기업합동, 독점매수, 독점판매, 기타 독점적 성질 또는 제한적 성질의 결정의 해소를 명하고 기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존속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 ⑦ 기업의 재편성, 재산처분, 기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배제하는 것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여 이를 승인하고 기업 재편성계획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 또는 그 내용이 부적당한 경우에 기업의 재편성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 ⑧ 기업재편성계획 실시에 있어서 일체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한을 가지는 관리인을 지명하고 기업재편성계획의 실시, 재산처분, 법인 기타 단체의 개산 또는 생산, 기타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배제하는 것에 필요한 조치의 실시를 감독하는 것
- ⑨ 지주회사 정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재산의 이전, 기타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⑩ 기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배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한 행위를 하는 것
- ⑪ 앞의 각호에서 기재한 사항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령을 하고 또는 필요한 규칙을 정하고 이를 공지하는 것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은 재벌 해체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1955년에 제정된 「과도경제력집중배제법 등을 폐지하는 법률(過度經濟力集中排除法等を廢止する法律)」(昭和30年7月25日法律第87号)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2. 재벌동족지배력배제법(財閥同族支配力排除法)

재벌을 해체하는 법률로 1948년에 「재벌동족지배력배제법(財閥同族支配力排除法)」(昭和23年1月7日法律第2号)이 제정되었다. 「재벌동족지배력배제법」은 6개의 장과 31개의 조문, 부칙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이 ‘총칙’(제1조 - 제3조), 제2장이 ‘재발동적자’(제4조), 제3장이 ‘재벌관계임원(役人)’(제5조 - 제10조), 제4장이 ‘재벌관계임원 심사위원회’(제11조 - 제22조), 제5장이 ‘소원’(제23조 - 제30조), 제6장이 ‘벌칙’(제31조)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된다.

「재벌동족지배력배제법」의 입법목적은 “재벌의 사업 형성 유지에 유력한 기여를 한 인적결합을 끊고 민주적이고 건전한 경제의 발달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하였다.

또한, 이 법률에서는 재벌에 대해서 정의를 정하였다. ‘재벌’이란 “이 법률 시행일에 이미 지주회사 정리위원회령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자의 지정을 받는 개인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이 혈족, 혼인, 기타 이에 준하는 관계에 의거하여 지정하는 구분에 따라 동일한 구분에 속하는 자의 군을 말한다”(제2조 제1항)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재벌회사’에 대해서 규정하였다. 그것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1) 쇼와 20년 9월 2일에 자본 총액이 1천만 엔을 넘는 회사이며 어떤 재벌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출자의 액면 학계액이 그 자본금액의 30%을 넘는 것
- (2) 어떤 재벌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출자 액수의 합계액이 1천만 엔을 넘는 회사(다만 (1) 및 (2)에 관해서 사실상 재벌에 지배된 것이 아니라고 간주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정함에 있어서 이를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 (3) 기타 재벌의 사업 형성 유지에 유력한 기여를 하거나 재벌의 경제적 지배력 행사에 유력한 수단이 된 것으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재벌동족지배력배제법」 역시 1951년에 제정된 「재벌동족지배력배제법을 폐지하는 법률(財閥同族支配力排除法を廃止する法律)」에 따라 폐지되었다.

3.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1947년에는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이하「독점금지법」이라고 표기한다)」(昭和22年4月14日法律第54号)이 제정되었다. 현재의 「독점금지법」은 12개의 장과 118개의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된다.

제1장	총칙 (제1조 - 제2조)
제2장	사적독점 및 부당한 거래제한 (제2조 - 제7조의 2)
제3장	사업자 단체 (제8조 - 제8조의 3)
제3장의 2	독점적 상태 (제8조의 4)
제4장	주식의 보유, 임원의 겸임, 합병, 분할, 주식이전 및 사업의 양수' (제9조 - 제18조)
제5장	불공정한 거래방법 (제19조 - 제20조의 7)
제6장	적용제외 (제21조 - 제23조)
제7장	금지(差止)청구 및 손해배상 (제24조 - 제26조)
제8장	공정거래위원회 (제27조 - 제76조)
제9장	소송 (제77조 - 제88조)
제10장	잡칙 (제99조의 2)
제11장	벌칙 (제89조 - 제100조)
제12장	법칙사건의 조사 등 (제101조 - 제118조)

‘경제 민주화’와 관련해서 해당하는 것은 제4장 ‘주식의 보유, 임원의 겸임, 합병, 분할 및 사업의 양수’의 부분이다. 제4장은 제9조부터 제19조가 포함되어 있으나 제12조는 이미 삭제되었다. 제9조는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회사의 설립 등의 제한, 신고의무’, 제10조는 ‘회사의 주식보유의 제한, 신고의무’, 제11조는 ‘은행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보유의 제한’, 제13조는 ‘임원겸임의 제한’, 제14조는 ‘회사 이외의 자의 주식소유의 제한’, 제15조는 ‘합병의 제한, 신고의무’, 제15조의 2는 ‘분할의 제한, 신고의무’, 제15조의 3은 ‘공동주식 이전의 제한, 신고의무’, 제16조는 ‘사업의 양수 등의 제한, 신고의무’, 제17조는 ‘탈법행위의 금지’, 제17조의 2는 ‘배제조치’, 제18조는 ‘합병·분할무효의 소송’으로 구성된다.

일본에서 독점금지법이 제정된 것은 1945년 10월 11일에 맥아더가 당시의 총리였던 시데하라 기주로(幣原喜重郎)에 대하여 일본의 정치개혁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⁹⁾ 당시의 독점금지법에서는 지주회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이 조

9) 西村暢史・泉水文雄, 『原始独占禁止法の制定過程と現行法への示唆』(競争政策研究センター, 2006年) 1頁参照. <http://www.jftc.go.jp/cprc/reports/cr-0206.pdf> (검색일: 2012. 11. 27).

항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 존재한 일본 재벌 해체를 염두로 둔 것이라고 한다.¹⁰⁾ 따라서 동족회사적 지주회사라는 이유로 28개 지주회사가 해체되었으며, 또한 51개의 사업회사가 주식의 처분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¹¹⁾

그러나 1997년에는 독점금지법 제9조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며 그때까지는 지주회사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사업지배력을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지주회사만 금지되는 형식으로 개정되었다.¹²⁾ 따라서 순수 지주회사가 해금 되었다. 일본에서는 현재 많은 순수 지주회사가 ‘○○홀딩즈’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제9조>

- (1)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사원의 지분도 포함한다. 이하도 같음)을 소유하는 것으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게 될 회사는 이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 (2) 회사(외국 회사도 포함한다. 이하도 같음)는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또는 소유하는 것으로 국내에서 사업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게 되는 회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
- (3) 앞의 2항에서 ‘사업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하는 것’이란 회사 및 자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주식의 소유에 의하여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다른 국내 회사의 총합적 사업규모가 상당수의 사업분야에 걸쳐서 현저하게 큰 것, 이러한 회사의 자금에 관한 거래에 기인하는 다른 사업자에 대한 영향력이 현저하게 큰 것 또는 이러한 회사가 상호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상당수의 사업분야에서 각각 유력한 지위를 점하는 것으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촉진의 장애가 되는 것을 말한다.
- (4) 다음에 기재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총 자산의 액수(공정거래위원회 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 자산의 합계금액을 말한다. 이하도 이 항에서는 같음)에서 국내 회사에 관한 것을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10) 正田彬, 「持株会社の禁止(独占禁止法9条)について」ジュリスト, 通巻1081号(1995年12月15日) 56頁参照.

11) 正田彬, 同上.

12) 正田彬, 「独占禁止法九条の改正について」ジュリスト, 通巻1123号(1997年11月15日) 3頁参照.

으로 합계한 액수가 각각 당해 각호에 게재하는 금액보다 적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달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회사 및 그 자회사의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회사가 다른 회사의 자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 ① 자회사의 주식 취득가격(최종적인 입차 대조표에서 따라 기재한 가격이 있을 때는 그 가격)의 합계 액수의 당해 회사의 총 자산의 액수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50을 넘는 회사(다음 호에서 '지주회사'라고 한다): 6천억 엔
 - ② 은행업, 보험업 또는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금융상품거래법(昭和二十三年法律第二十五号)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제1종 금융상품거래업을 말한다. 다음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도 같음)을 포함하는 회사(지주회사를 제외한다): 8조 엔
 - ③ 앞의 2호에서 게재하는 회사 이외의 회사: 2조 엔
- (5) 앞의 2항에서 '자회사'란 회사가 그 총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다른 국내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회사 및 그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자회사가 거기의 총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를 가지는 다른 국내 회사는 당해 회사의 자회사라고 간주한다.
- (6) 전항의 경우에 회사가 가지는 의결권과 자회사 및 그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자회사 또는 회사의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자회사가 가지는 의결권에는 사채, 주식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社債, 株式等の振替に関する法律) 제147조 제1항 또는 제1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자에 대항할 수 없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7) 새롭게 설립된 회사는 당해 회사가 그 설립 시에 제4항에 규정할 경우에 해당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IV.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일본에서는 1990년대 말에도 대기업을 규제할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예를 들면 일본공산당은 ‘대기업의 민주적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¹³⁾ 이는 현대사회에서 대기업이나 재계가 경제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계약 해제나 중소기업의 하청가격 인하 등 제도적인 문제나 환경파괴, 부패 등의 반사회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하여 대기업에 사회적인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¹⁴⁾

또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첫째는 국민의 생활을 지키는 민주적인 룰을 대기업에 준수시키는 것이고, 둘째는 재정이나 세제·사회보장 등 정부가 가지는 경제에 대한 개입 구조를 대기업이 아니라 국민 본위로 바꾸고 대기업에 책임을 지게 한다고 하였다.¹⁵⁾

일본공산당은 정부가 현재도 대기업 지원 중심의 경제성장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하여, 법인세 인하 등의 현재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¹⁶⁾ 그리고 너무 낮은 대기업 법인세의 시정, 소득세의 최고세율 시정, 주식의 배당 등의 우대세제를 그만두는 것 등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¹⁷⁾

V. 맺음말

한국에서는 그동안 소수의 거대한 재벌에 의하여 경제가 지탱되는 구조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재벌과의 거리를 신경 쓸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¹⁸⁾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재벌계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지 않으면 경제가 성장하지 않지만, 반대로 서민의 삶은 향상하지 않아 ‘격차사회’가 이루어지므로 국민으로부터 반발을 받게 된다.¹⁹⁾ 그러나 반면에 재벌계 기업을 규제하면 경제성장을 저해하게 된다는 딜레마를 가지고 있다.²⁰⁾

한편,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GHQ에 의한 민주화정책의 일환으로

13) 日本共産党. <http://www.jcp.or.jp/tokusyu-10/05-jcp-qa/p03a039.html> (검색일: 2012. 11. 20.).

14) 日本共産党. <http://www.jcp.or.jp/tokusyu-10/05-jcp-qa/p03a039.html> (검색일: 2012. 11. 20.).

15) 日本共産党. http://www.jcp.or.jp/faq_box/001/991211_faq.html (검색일: 2012. 11. 20.).

16) しんぶん赤旗. http://www.jcp.or.jp/akahata/aik12/2012-10-30/ftp2012103005_02_0.html (검색일: 2012. 11. 20.).

17) 日本共産党. <http://www.jcp.or.jp/tokusyu-10/10-syouthizei/02.html> (검색일: 2012. 11. 20.).

18) 大西, 前掲, 32頁参照. (이미 앞에 있으니 ‘전개’로 바꿨음)

19) 大西裕, 同上, 32-33頁参照.

20) 大西裕, 同上.

재벌의 해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공산당이 '대기업의 민주적인 규제'를 내세우고 있는 것 이외에는 대기업에 대한 제한적인 논의는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공산당 등의 일부 정당의 제와하면 한국에서 말하는 '경제 민주화'와 같은 움직임은 잘 안 보인다.

생각건대 국가가 '경제 민주화'의 명목으로 대기업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주의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아시아와 같은 '후발형' 자본주의국가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달성함에 있어서 재벌계 대기업에 의한 공헌이 아주 컸다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단순히 '대기업=惡'이라는 구조를 만들고 대기업을 비판하는 것은 향후의 경제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게 될 수도 있다.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 경제발전을 목표로 할 것인지 또는 대기업에 도태당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정책을 택할 것인지 큰 기로에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문헌

한국어 문헌

金哲洙, 「憲法學概論」, 서울: 博英社, 2003년.

鄭宗燮, 「憲法學原論」, 서울: 博英社, 2012년.

일본어 문헌

金哲洙, 『韓国憲法の50年』(敬文堂, 1998年).

논문

大西裕, 「大統領選挙で何が変わるか「経済民主化」が最大の争点 財閥弱体化の政策は採りにくい」 エコノミスト, 2012年10月16日号.

キム・テユン, 「韓国大統領選の争点は財閥「経済民主化」で激論」, 東洋経済, 2012年10月27日号.

正田彬, 「持株会社の禁止(独占禁止法9条)について」ジュリスト, 通巻1081号(1995年12月15日).

正田彬, 「独占禁止法九条の改正について」ジュリスト, 通巻1123号(1997年11月15日).

웹사이트

한국어 자료

“‘경제민주화’ 배경과 정의” 서울신문, 2012년 10월 15일. <http://election2012.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15006004&reDirect=false> (검색일: 2012. 12. 2.).

“[뉴스분석] 안철수 사퇴 ... 박근혜-문재인 대결로”, 중앙일보, 2012년 11월 24일.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128/9978128.html?ctg=> (검색일: 2012. 11. 26.).

일본어 자료

しんぶん赤旗. http://www.jcp.or.jp/akahata/aik12/2012-10-30/ftp2012103005_02_0.html (검색일: 2012. 11. 20).

西村暢史・泉水文雄, 『原始独占禁止法の制定過程と現行法への示唆』(競争政策研究センター, 2006年). <http://www.jftc.go.jp/cprc/reports/cr-0206.pdf> (검색일: 2012. 11. 27).

日本共産党. <http://www.jcp.or.jp/tokusyu-10/05-jcp-qa/p03a039.html> (검색일: 2012. 11. 20).

日本共産党. http://www.jcp.or.jp/faq_box/001/991211_faq.html (검색일: 2012. 11. 20).

日本共産党. <http://www.jcp.or.jp/tokusyu-10/10-syohizei/02.html> (검색일: 2012. 11. 20).

蠟山政道, 「よみがえる日本 占領下の民主化過程」日本ペンクラブ. www.japanpen.or.jp/e-bungeikan/guest/pdf/rouyamamasamichi.pdf (검색일: 2012. 11. 5).